

2026학년도 제2차 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

1. 일시: 2026년 5월 14일(목) 14:00 ~ 14:30

2. 장소: 성신여자대학교 행정관 209호 회의실

3. 참석위원: 총무처장 명선영(위원장), 안전팀장 이종철

안전팀 김민식(안전관리자), 창조중부보건안전 엄현경

건축시설팀 반장 황지제, SK윌더스 팀장 문재구

아이비푸드 영양사 이윤미, 삼구아이앤씨 소장 주광호

4. 안 건

제1호 의안: 관리감독자 선임 변경(법 제16조)

제2호 의안: 대학 위험성평가 시행(법 제36조)

제3호 의안: 밀폐공간 긴급 구조훈련 시행(안전보건규칙 제640조)

5. 회의 내용

가. 개회

위원장은 2026학년도 제2차 안전보건위원회의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다.

나. 안건심의

1) 제1호 의안: 관리감독자 선임 변경(법 제16조)

- 위원장: 제1호 안건을 상정하고, 안전관리자에게 설명을 요청하다.

- 안전관리자: 운정캠퍼스 김현지 보안팀장으로 선임 변경을 설명하다.

- 위원장: 제1호 안건심의를 종결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.

2) 제2호 의안: 대학 위험성평가 시행(법 제36조)

- 위원장: 제2호 안건을 상정하고, 안전관리자에게 설명을 요청하다.

- 안전관리자: 위험성평가란 작업공정에 대하여 연 1회 위험성수준을 평가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함을 설명하다.
- 위원장: 제2호 안건심의를 종결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.

3) 제3호 의안: 밀폐공간 긴급 구조훈련 시행(안전보건규칙 제640조)

- 위원장: 제3호 안건을 상정하고, 안전관리자에게 설명을 요청하다.
- 안전관리자: 밀폐공간 작업자 연 2회 긴급 구조훈련 시행을 설명하다.
- 위원장: 제3호 안건심의를 종결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.

※ 기타 논의

1) 제1차 회의 기타 논의건 결과

- 문재구 위원의 행정관 및 프라임관 인접 철계단 미끄럼방지 조치 요청 사항에 대하여, 안전관리자는 건축시설팀에서 미끄럼방지 조치 완료함을 답변하다.
- 황지제 위원의 미대 폐수 운반 대책 수립 요청사항에 대하여, 안전관리자는 연 2회 폐수 수거업체 계약 시행 예정임을 답변하다.

2) 제2호 의안 관련

- 안전관리자: 미화, 영선업체는 위험성평가를 자체시행한 결과를 안전팀에 제출해야 함을 설명하다.

3) 제3호 의안 관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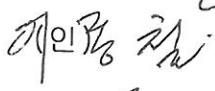
- 안전관리자: 밀폐공간 출입전 안전팀에 확인을 받아야 하고, 복합가스 측정기로 공간에 가스농도가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함을 설명하다.
- 위원장: 교내 밀폐공간 시건조치 현황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여 관리자 외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요청하다.
- 안전관리자: 교내 밀폐공간 시건조치 현황을 파악하고 시건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시건조치하여 관리자 외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겠음을 답변하다.

다. 폐회선언

위원장은 더 이상의 안건 및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하다.

2026년 5월 14일

기록자: 이종철

위원장	명선영	(인) 
위원	이종철	이종철 
위원	김민식	(인) 
위원	엄현경	(인) 
위원	황지제	(인) 
위원	주광호	(인) 
위원	문재구	(인) 
위원	이윤미	(인) 

[2026학년도 제2차 안전보건위원회]



2026. 5. 14.(목) / 14시 / 행정관 209호 회의실



성신여자대학교

2026학년도 제2차 안전보건위원회 회의자료

2026. 5. 14.

총무처 안전팀

2026학년도 제2차 성신여자대학교 안전보건위원회

□ 개 요

- 일 시 : 2025. 5. 14.(목) 14:00
- 장 소 : 행정관 209호 회의실
- 안전보건위원회 참석위원

연 번	구 분	위 원	소 속	직 위	성 명	비 고
1	위원장	당연직	총 무 처	처장	명선영	안전보건 관리책임자
2	사용자 위원	위촉직	안 전 팀	팀장	이종철	안전보건 총괄책임자
3		당연직	안 전 팀	담당	김민식	안전관리자
4		당연직	창조중부보건	담당	엄현경	보건관리자
5	근로자 위원	당연직	건축시설팀	반장	황지제	근로자 대표
6		위촉직	삼구아이앤씨	소장	주광호	
7		위촉직	SK 월더스	팀장	문재구	
8		위촉직	아이비푸드	영양사	이윤미	

□ 상정안건 (3건)

NO.	안전보건위원회 안건	근 거 (산업안전보건법)
1	▶ 관리감독자 선임 변경	▶ 제16조
2	▶ 대학 위험성평가 시행	▶ 제36조
3	▶ 밀폐공간 긴급 구조훈련 시행	▶ 안전보건규칙 제640조

안전 1

관리감독자 선임 변경

☐ 관계법령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6조

☐ 안전내용

- 보안업체(운정캠퍼스) 관리감독자 변경

구분	소속	직급	성명	임 면 사항		임면일
				면	임	
기존	SK 윌더스	팀장	박대인	성신여자대학교 관리감독자	-	2026.3.8
변경			김현지	-	성신여자대학교 관리감독자	2026.3.9

□ 관계법령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6조

□ 안전내용

- 위험성평가란 유해·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위험성의 크기가 큰 사항은 개선조치를 하여야 함
- 평가대상: 대학 현업근로자(영선 기능직, 보안, 조리) 98명
※ 영선·미화업체 자체실시하여 제외하며 인원 변동될 수 있음
- 평가주기: 정기평가 연 1회
- 평가일정(예정)
 - 전문기관에 대학 위험성평가를 의뢰하여 사전준비(5월)
 - 위험성 결정하여 감소대책 수립(5월)
 - 개선조치 시행(6~8월)
 - 개선결과 전문기관 전달(9월)
 - 최종 결과보고서 납품(9월)

안전 3

밀폐공간 긴급 구조훈련 시행

□ 관계법령

-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640조

□ 안전내용

- 우리 대학 밀폐공간 작업자 대상으로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사고 예방 교육 및 현장 시나리오 훈련 실시
- 훈련일정(예정)
 - 수정캠퍼스: 6. 9.(화) 10:30 수정관 정화조 앞
 - 운정캠퍼스: 6. 10.(수) 10:30 지하3층 저수조 앞
- 참석 대상: 외부 청소업체 감독(설비직원) 및 미화업체 직원
 - 수정캠퍼스 설비직원 및 미화직원
 - 운정캠퍼스 설비직원
- 훈련 내용: 밀폐공간 작업자 대상으로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사고 예방 교육 및 현장 시나리오 훈련 실시
- 훈련 주기: 6개월 1회 (하반기 12월 예정)

산업안전보건법

제16조(관리감독자)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(이하 “관리감독자”라 한다)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.

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 ① 사업주는 건설물, 기계·기구·설비,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,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·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.

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, 절차 및 시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64조(긴급 구조훈련)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, 구조용 장비의 사용,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,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